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舊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예비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집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의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의무 태만 시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적용하는 대신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당 조문의 위헌적인 내용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사례인 「예비군법」 상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기준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처벌 기준 조정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인이 전달 행위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